

◎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한 세칙

제정 2005. 2. 25.

개정 2017. 8. 8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(이하 “준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, 준칙,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.

제3조(등록정보 변경 제한)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,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 이 때 등록정보 변경 제한은 등록인 이름, 등록인 주소, 등록증, 등록번호에 한한다.
<개정 2017. 8. 8.>

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, 가압류, 압류 등의 결정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, 법원의 결정문을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다. 이 때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항목은 법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7. 8. 8.>

제4조(등록정보 변경 제한의 해제)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,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

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해제통지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, 법원의 해제통지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다.

제5조(도메인이름의 이전) ① 진흥원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1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 단, 등록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8. 8.>

② 삭제 <2017. 8. 8.>

③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이전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<신설 2017. 8. 8.>

제6조(도메인이름의 말소)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한다.<개정 2017. 8. 8.>

1.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말소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

2. 삭제 <2017. 8. 8.>

3. 법원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

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3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 단, 등록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8. 8.>

③ 삭제 <2017. 8. 8.>

④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제5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며,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, 등록인에게 조치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알린다. 단, 피고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정보가 등록DB의 도메인이름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,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8. 8.>

부 칙(2005. 2. 25.)

(시행일)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8. 8.)
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 <개정 2017. 8. 8.>

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				
도메인이름				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인	기관명 (개인명)	(한)	(영)	
	등록증종류		등록증번호	
	책임자성명	(한)	(영)	
	책임자연락처		전자우편주소	
	담당자성명	(한)	(영)	
	담당자연락처		전자우편주소	
	주소	(한) (영)		
	네임서버	호스트이름 : IP주소 :		
신청인의 대리인	성 명		전자우편주소	
	주 소			
	전화번호		핸드폰번호	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피신청인 (현등록인)	기관명 (개인명)			
	책임자성명			
	책임자연락처		전자우편주소	
o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(예 : 조정결정문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 o 조정결정 사건번호 기재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				
첨부서류 : 조정결정 통지문 1부, 조정결정 1부, 위임장 1부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				

[별지 제2호]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<개정 2017. 8. 8.>

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				
도메인이름				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인	기관명 (개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(개인은 기재하지 않음)
	대표자성명		전자우편주소	
	주 소			
	전화번호		휴대폰	
신청인의 대리인	성 명		전자우편주소	
	주 소			
	전화번호		핸드폰번호	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피신청인 (현등록인)	기관명 (개인명)			
	책임자성명			
	전화번호			
	전자우편주소			
o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(예 : 조정결정문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 o 조정결정 사건번호 기재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				
첨부서류 : 조정결정 통지문 1부, 조정결정 1부, 위임장 1부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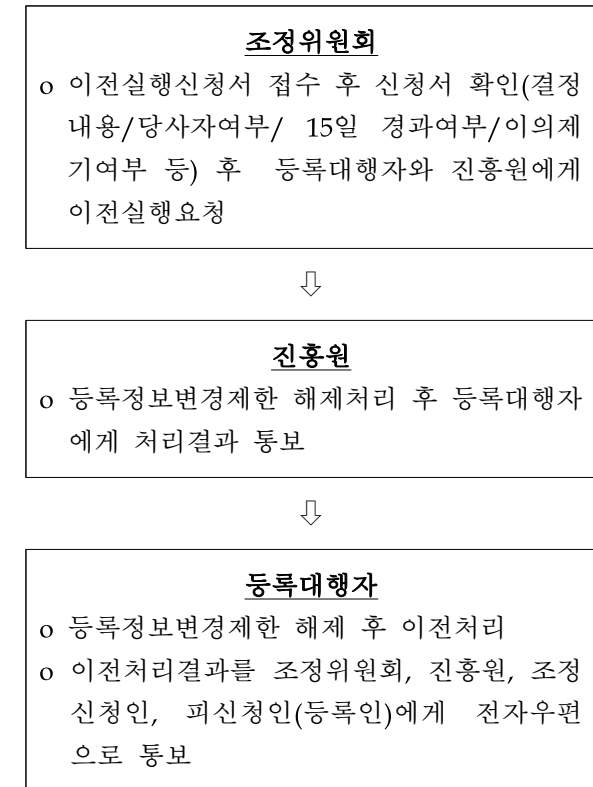
[별지 제3호]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<개정 2017. 8. 8.>

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		
도메인이름		
원고	기관명 (개인명)	
	대표자성명	
	전화번호	
	전자우편주소	
피고 (현등록인)	기관명 (개인명)	
	책임자성명	
	전화번호	
	전자우편주소	
o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(예 : 확정증명원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 o _____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원고/피고 (인 또는 서명) (주)등록대행자 귀중		
첨부서류 : 확정증명원 1부, 판결문 1부,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		
*원고가 등록 말소판결 처리 신청 시,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처리가 진행됩니다.		

[별지 제4호]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<신설 2017. 8. 8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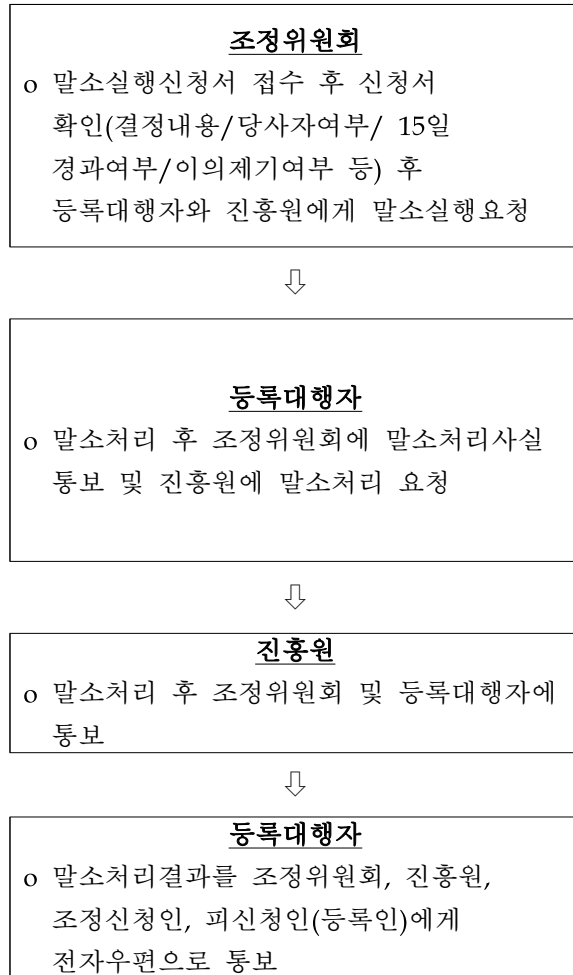
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				
도메인이름				
원고	기관명 (개인명)	(한)	(영)	
	등록증종류		등록증번호	
	책임자성명	(한)	(영)	
	책임자연락처		전자우편주소	
	담당자성명	(한)	(영)	
	담당자연락처		전자우편주소	
	주소	(한) (영)		
	네임서버	호스트이름 :		IP주소 :
피고 (현등록인)	성명			
	책임자성명			
	전화번호			
	전자우편주소			
○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(예 : 확정증명원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 ○-----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원고/피고 (인 또는 서명) (주)등록대행자 귀중				
첨부서류 : 확정증명원 1부, 판결문 1부,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*원고가 등록 말소판결 처리 신청시,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처리가 진행됩니다.				

[별표 제1호]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<개정 2017. 8. 8.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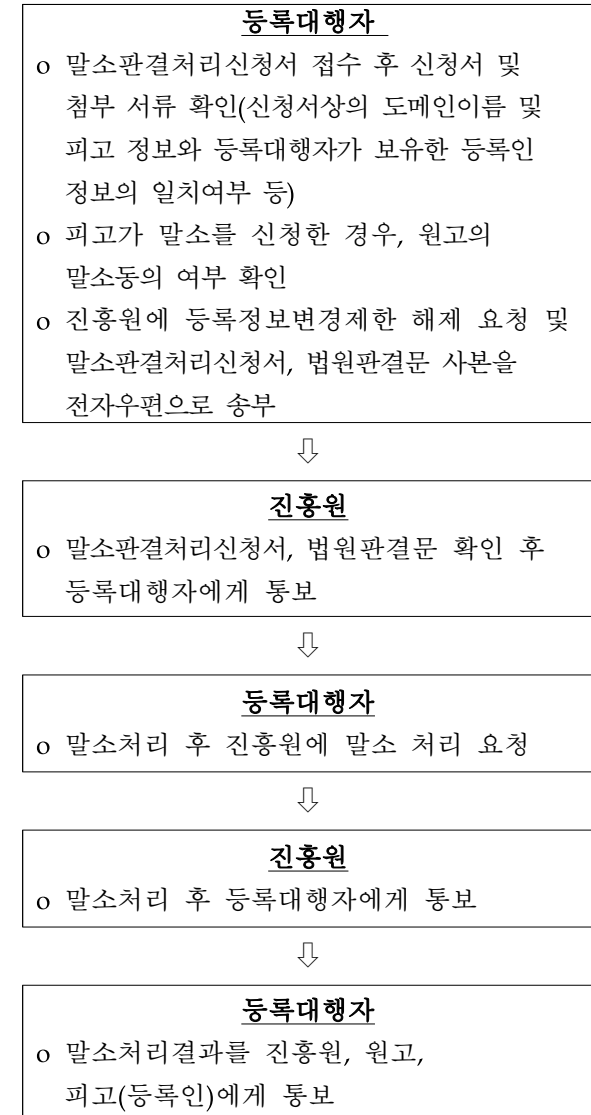
[별표 제2호] 삭제 <2017. 8. 8.>

[별표 제3호]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<개정 2017. 8. 8.>



[별표 제4호] 삭제 <2017. 8. 8.>

[별표 제5호] 법원의 말소판결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 <개정 2017. 8. 8.>



[별표 제6호] 법원의 이전판결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<신설 2017. 8. 8.>

등록대행자

- 이전판결처리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확인(신청서상의 도메인이름 및 피고 정보와 등록대행자가 보유한 등록인 정보의 일치여부 등)
- 피고가 이전을 신청한 경우, 원고의 이전동의 여부 확인
- 원고의 회원가입 여부 확인(필요시)
- 진흥원에 등록정보변경제한 해제 요청



진흥원

- 등록정보변경제한 해제처리 후 등록대행자에게 처리결과 통보



등록대행자

- 등록정보변경제한 해제 후 이전처리
- 이전처리결과를 진흥원, 원고, 피고(등록인)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